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61,359,101	25,840,773
일반회계	829,003,075	24,870,092
특별회계	32,356,026	970,681
공기업특별회계	13,188,867	395,666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3,188,867	395,666
기타특별회계	19,167,159	575,015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0,100	1,803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88,523	2,65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38,869	28,166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67,680	29,030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302,227	39,067
수질개선 특별회계	14,509,760	435,293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1,300,000	39,000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00,76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4,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